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임문영 · 권향엽 · 박해철
오기형 · 김성범 · 박균택
양부남 · 김준환 · 박희승
김 윤 · 장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 나. 중소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폭염·한파의 지속에 따른 냉방·난방 비용의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후재난기간(「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을 말한다)이 속하는 월에 시장등의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하여 상인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재난 유형별 지원시책)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상업기반시설(안전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피해 예방 및 대비
2. 피해를 입은 상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를 위한 지원의 내용·

기준 및 절차 마련

3. 그 밖에 자연재난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시장등과 그 상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3(폭염·한파의 지속에 따른 냉방·난방 비용의 지원)</u> <u>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후 재난기간(「기상법」 제13조의 2에 따른 특보 중 폭염 또는 한 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 효된 기간을 말한다)이 속하는 월에 시장등의 냉방 또는 난방 을 위하여 상인이 부담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u><신 설></u>	<u>제24조의4(재난 유형별 지원시책)</u> <u>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u>

1. 상업기반시설(안전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피해 예방 및 대비

2. 피해를 입은 상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를 위한 지원의 내용·기준 및 절차 마련

3. 그 밖에 자연재난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시장등과 그 상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